

대학장수여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대학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수여대상) 대학장의 수여대상은 본교의 설립이념에 입각하여 정치, 경제, 문화, 과학, 교육, 종교 및 기타 부문에서 대학발전, 인류문화의 향상, 사회복지의 증진 및 세계평화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사들로 한다.

제3조 (대학장의 종류) 대학장의 종류는 금장과 은장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회) 대학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심의)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수여의 가부
2. 수여의 시기와 장소
3. 대학장의 종류
4. 기타

제6조 (보고)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 <'00 제7차 교무위원회>)